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02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1.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3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 12

Ⅰ. 개요

1.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02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16.

(3) 회 부 일 : 2025. 9.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AI 우수인력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력 유입 촉진, 영상·문화산업의 지속 성장,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제1항, 제29조의8제5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김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황정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행	개정안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8조의3)	○ 감면특례기준 완화, 감면기간 확대, 감면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감면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황정아의원안)
○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	○ (현행과 같음)
○ 감면기한 및 감면율: 10년간 50%	○ 20년간 75%(황정아의원안) ○ 10년간 50%, 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 70%(정준호의원안)
○ 원천징수비율: 50%	○ 원천징수비율: - 25%(황정아의원안) - 50%, 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 30%(정준호의원안)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 (김주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추경호의원안, 정부안) 2030. 12. 31.(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황정아의원안, 정준호의원안)
○	○ 시행일: 2026.1.1.(김주영의원안)

* 김주영의원안 2025. 3. 19. 발의(의안번호 9068),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이인선의원안 2025. 5. 7. 발의(의안번호 10385), 황정아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95), 추경호의원안 2025. 8. 18. 발의(의안번호 12210), 정준호의원안 2025. 9. 15. 발의(의안번호 12984), 서영교의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3025),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8건의 개정안은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먼저, 황정아의원안은 감면대상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대학·연구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며,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며, 소득세의 원천징수비율을 현행 50%에서 25%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정준호의원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국내복귀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① 감면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② 원천징수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국내복귀 연구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8건의 개정안들은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연장하려는 것으로,

김주영의원안 및 서영교의원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황정아의원안 정준호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내국인 우수인력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구기관에 취업한 경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의미함.

□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24억원이며, 2026년에는 9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전망)	2026년(전망)
감면액	15	24	92	9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세계 각국이 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경쟁[1] 중인 가운데 내국인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은 증가하는 반면[2],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는 저조[3]하여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1) 주요국 대표 해외인력 유치·네트워크 사업

독일 훔볼트재단 (해외 포닥·중견·리더)	일본학술진흥회 (해외 포닥·중견·리더)	중국 천인계획 (해외 포닥·중견·리더)	영국 뉴톤 국제 Fellowship (해외포닥 유치)
- 인당 5~8천만원/년 지원 - 700명/년 유치 - 전세계 2만9천여명 동문 회원 보유 (노벨상 수상자 50명)	- 인당 5~8천만원/년 지원 - 700명/년 유치 - 단기(7일~12개월) 프로그램 다수 운영	- (포닥) 인당 1.7억원 ~2.2억원/년 지원 - 주거지원, 자녀학교 지원, 배우자 일자리 제공 등	- 인당 7~8천만원/년 지원 - 연구종료 후 10년까지 매년 £6,000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 방안(안)”, 2019. 2, p. 1.

2) 한국에서 석사를 마친 인력들이 미국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러 움직이는 이동 흐름이 뚜렷하며,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우수한 한인 인재들은 미국에 대부분 체류하거나,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로 한정된 이동을 보인다고 분석 (자료: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보고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p. 96)

3) 전체 한국인 미국박사학위자의 졸업 후 미국 체류계획이 있는 비중은 2013년 59.1%, 2014년 60.7%, 2015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세제지원을 통해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외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시행 중이므로, 국내복귀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해서도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준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해외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 결정에는 세제상의 유인 외에도 연구 환경, 개인의 직업적 성취 및 향후 경로, 기타 정주 여건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지원만을 통한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 촉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1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4], 특정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세후소득과 해당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 사이에는 특별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의 세후소득을 증대시키는 조세특례가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유치'와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는 국내 복귀 결정유인, 장애 요소 및 복귀 결정 과정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년 62.9%, 2016년 66.7%, 2017년 68.5%, 2018년 63.6%임. (자료: NSF, Survey of Earned Doctorates)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1. 9.

둘째, 국내에 거주·취업 중인 내국인 우수 인력과의 세제지원의 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국내 거주 내국인 우수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음.

셋째, 황정아의원안은 외국대학·연구기관에서의 근무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있고, 감면 기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변경하며, 소득세 원천징수비율을 50%에서 25%로 완화하는 등 소득세 감면 특례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경력이 짧은 신진연구자에 대해서까지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성[5], 국내 연구자와의 과세 형평성 저해, 국내연구 생태계의 훼손 우려[6], 수혜 취득을 주요 목적으로 한 특례요건의 형식적 구비 등 도덕적 해이 리스크 등의 문제가 예상됨.

넷째, 정준호의원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국내복귀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원천징수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음.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가(정부+민간) 총 R&D 금액119조 740억원의 70.2%인 83억 5,724억원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고, 해당 지역의 연구원도 40만 4,138명으로 전

5) 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박사후과정생 학술연구지원사업, 과기부 기초연구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신진·경력연구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5년 또는 7년임

6) 국내 학계수준보다 열위에 있는 외국대학 등에서의 근무경력이 우대받게 되는 문제, 국내 대학원 진학 대신 해외 학위취득후 국내복귀를 시도하는 문제 등 발생 가능.

국(60만 3,566명)의 66.9%로서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상황임. 따라서 정준호의원안과 같이 지역 연구기관으로 복귀하는 연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가산하여 부과한다면 우수인력의 국내유치에 대한 유인을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 R&D 역량의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지역별 연구개발비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지역	2019	2020	2021	2022	2023
경기	459,348	470,451	519,571	577,028	610,981
서울	134,449	144,320	162,043	176,885	188,712
대전	77,059	88,737	94,428	103,791	110,852
충남	34,752	36,213	36,330	41,164	49,794
경북	28,095	26,871	27,751	31,953	38,412
인천	28,459	29,366	32,270	36,029	36,031
경남	31,895	30,898	34,080	32,555	33,415
충북	16,595	19,217	21,307	24,874	24,259
부산	15,817	16,968	17,627	20,377	20,024
대구	13,360	13,641	14,876	15,784	15,891
전북	11,217	12,361	14,112	14,756	14,757
광주	8,269	9,539	11,089	11,293	11,016
울산	11,100	10,672	11,900	13,079	9,747
전남	7,238	7,041	8,143	9,464	8,977
강원	5,172	5,551	6,859	7,635	7,945
세종	5,941	6,115	6,534	7,513	7,450
제주	1,744	2,316	2,433	2,278	2,477
합계	890,471	930,717	1,021,352	1,126,460	1,190,740

자료: “2024년 지역 R&D 실태조사”, 2025.2.2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최근 5년간 지역별 연구원 수 현황(2019~2023)]

(단위: 명)

지역	2019	2020	2021	2022	2023	2023비중 (%)
서울	132,997	139,511	151,361	156,269	158,706	26.29
부산	16,507	17,305	17,386	17,736	17,192	2.85
대구	14,047	14,498	14,856	14,455	14,453	2.39
인천	21,685	21,917	23,150	22,792	22,179	3.67
광주	9,471	9,967	9,392	8,917	8,944	1.48
대전	37,357	35,691	38,009	38,417	40,024	6.63
울산	8,025	7,900	7,948	8,161	8,362	1.39
세종	4,199	4,741	4,979	5,028	5,359	0.89
경기	195,972	205,899	215,116	223,612	223,253	36.99
강원	7,084	7,268	7,938	7,041	6,898	1.14
충북	13,318	14,137	15,274	16,339	15,481	2.56
충남	18,384	18,508	19,238	19,101	20,838	3.45
전북	9,207	10,032	10,682	11,216	10,941	1.81
전남	5,532	5,769	6,055	6,606	6,464	1.07
경북	19,535	19,189	19,891	20,555	20,274	3.36
경남	22,807	23,396	22,888	22,840	22,310	3.7
제주	2,009	2,241	2,323	2,445	2,340	0.39
합계	538,136	558,045	586,666	601,530	603,566	100

자료: “2024년 지역 R&D 실태조사”, 2025.2.2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다만, 복귀예정자가 국내 복귀지역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도 해외거주 인력이 국내복귀를 결정하는 과정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즉, 국내복귀를 결정한 연구인력의 경우에도 수도권과 지방 중 복귀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세제상의 유인보다는 오히려 복귀장소를 선택할 경우 얻게 되는 직책·권한 및 연구 자율성, 테뉴어 취득 여부 등 경력 경로, 연구비·동료집단 등 연구 환경, 교

육·문화·의료 등의 거주 여건 등과 같은 변수가 결정 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득세는 국세로서 원칙적으로 과세권이 미치는 전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점, 개정안에 따를 경우 수도권의 저소득 연구자는 과세되고, 비수도권의 고소득 연구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김주영의원안 및 서영교의원안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7. 12. 31.로 2년간,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8. 12. 31.로 3년간,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황정아의원안 및 정준호의원안은 2030. 12. 31.로 5년간 연장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경우, 연 평균 10억원(김주영의원안)에서 최대 62억원(황정아의원안)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누적	연평균
김주영 의원안	△5.6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5.6	△11.2	△10
윤준병 의원안	△5.6	△11.2	△16.8	△22.3	△27.9	△27.9	△27.9	△27.9	△27.9	△27.9	△22.3	△27.9	△20
이인선 의원안	△5.6	△11.2	△16.8	△22.3	△27.9	△27.9	△27.9	△27.9	△27.9	△27.9	△22.3	△27.9	△20
황정아 의원안	△25.1	△33.5	△41.9	△50.3	△64.2	△69.8	△75.4	△81.0	△86.5	△92.2	-	△62.0	△6.2
서영교 의원안	△18.4	△36.8	△36.8	△36.8	△36.8	△36.8	△36.8	△36.8	△36.8	△36.8	△18.4	△36.8	△33.5

또한,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과 같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경우,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285억원(연평균 9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28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정부안	△95	△95	△95	△285	△95

문 의 처
02)6788-5149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요

□ 법 제25조의6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30%를 세액공제함으로써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드라마·영화 등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법 제25조의6) 개요]

구분	내용
공제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 영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공제율	①(기본공제) + ②(추가공제) - ①: 대 5%, 중견 10%, 중소 15% - ②: 대·중견 10%, 중소 15% * 추가공제는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공제시기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영상콘텐츠 제작산업은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제조업 등과 달리 많은 설비투자가 요구되지 않고 제작비용의 상당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임. 따라서,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는 데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에 동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7)]

동 제도에 따라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제작비용은 기업규모에 따라 각각 5%(대기업), 10%(중견기업), 15%(중소기업)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10%(대기업·중견기업) 또는 15%(중소기업)의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종전에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음.

또한, 미국 등 거대 미디어·플랫폼 사업자와 중국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자들의 진출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 이하 'OTT')를 공제대상에 추가하였음.

이후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

7) 문화체육관광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16, p.3 참고

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에서 15%로, 중견기업의 경우 7%에서 10%로, 대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하도록 하는 등 공제율을 대폭 인상하였음.

한편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하였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1	0.8	1	1	2	2
법인세	169	309	319	257	251	256
합계	170	310	320	258	253	258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현행법 제25조의7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3%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산업 분야의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8]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직

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되 자금 흐름과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부분과 자금관리 부분을 각기 다른 회사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함.[9]

통상 프로젝트의 개시와 함께 출범하여 프로젝트 완성과 더불어 해산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 사원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됨.[10]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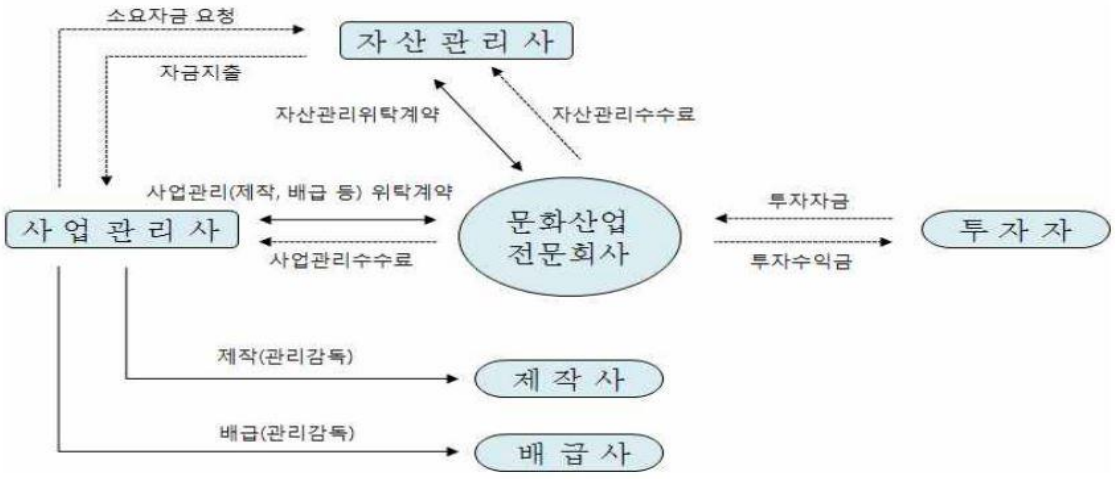

자료: 「문화산업전문회사 실무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투자의 투명성 확보 및 자금조달의 다변화, 제작사와 프로젝트의 분리를 통한 프로젝트 투자자금 흐름의 투명화,

---

8)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일반 법인과는 달리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Paper Company로서 프로젝트의 개시와 함께 출범하여 프로젝트 완성과 더불어 해산함.

9) 추노·시크릿가든·태양의 후예·이태원 클라쓰 등의 콘텐츠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제작된 바 있음.

10)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자금 및 회계의 독립성과 안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기존 투자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자금 및 회계를 통합 관리함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의 자금이 다른 프로젝트 또는 회사 전체의 자금과 혼합되어 자금흐름의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았음.

이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자금 조달에 있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 자금이 해당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의 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존재하였음.

한편,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는 매년 1회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기준 321개의 전문회사가 운영 중임.

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인철의원안, 이건태의원안, 천하람의원안, 김선교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신동욱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정성호의원안, 김승수의원안, 정연욱의원안, 임오경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6)	□ 적용기한 연장 또는 폐지
○ 공제대상: 다음 어느 하나의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내외 발생비용 -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 영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 공제대상: 개정안별 상이
○ 공제율: ①(기본공제)+②(추가공제) - ①: 대 5%, 중견 10%, 중소 15% - ②: 대·중견 10%, 중소 15% *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 공제율: 개정안별 상이
○ 공제시기: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 공제시기: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 (김선교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신동욱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정

현 행	개정안
	연욱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2029. 12. 31. (윤준병의원안, 김승수의원안) 2030. 12. 31. (조인철의원안, 임오경의원안) 2035. 12. 31. (천하람의원안) 2040. 12. 31. (김성원의원안) 영구 세액공제 제도화 (이건태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김성원의원안) 2026. 1. 1. (조인철의원안, 천하람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신동욱의원안, 정성호의원안, 김승수의원안, 임오경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공포 후 6개월(이건태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정연욱의원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제25조의7)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공제대상: 개정안별 상이
○ 공제율: 3%	○ 공제율: (현행과 같음)
○ 공제시기: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공제시기: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 (김선교의원안, 정연욱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2029. 12. 31. (윤준병의원안) 2030. 12. 31. (조인철의원안)

현 행	개정안
	2040. 12. 31. (김성원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김성원의원안) 2026. 1. 1. (조인철의원안, 김선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공포 후 6개월(정연욱의원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 조인철의원안 2025. 1. 14. 발의(의안번호 7495), 이건태의원안 2025. 2. 11. 발의(의안번호 8072), 천하람의원안 2025. 2. 19. 발의(의안번호 8290), 김선교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35), 민형배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28), 윤준병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30), 신동욱의원안 2025. 3. 27. 발의(의안번호 9409), 김성원의원안 2025. 5. 9. 발의(의안번호 10436), 정성호의원안 2025. 6. 10. 발의(의안번호 10694), 김승수의원안 2025. 6. 25. 발의(의안번호 11073), 정연욱의원안 2025. 6. 26. 발의(의안번호 11105), 임오경의원안 2025. 7. 8. 발의(의안번호 11354), 박성훈의원안 2025. 8. 21. 발의(의안번호 12301),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3025),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2025. 10. 15. 발의(의안번호 13606)

□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첫째, 영상콘텐츠산업의 특성상 콘텐츠가 기획되어 제작에 착수하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수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일몰기한을 충분히 연장할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 출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둘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본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업당 연평균 8억원 이상의 제작비 투자 증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부가가치 유발액은 1,623억원, 순세수 감소액은 1,270억원으로 추정되어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음.[11]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개 제도는 영상콘텐츠[12] 제작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다른 업종[13]의 특수목적회사 또는 영상콘텐츠 외 공연, 전시, 음악과 같은 다른 문화산업과의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1) 한국콘텐츠진흥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효과분석', 2025. 2.

12)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나.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13)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장르로는 방송, 영화, 에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외에 공연, 전시, 음악, 게임, 융복합, 만화, VR 등 다양한 장르가 있음.

둘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용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
<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
<tr><th>수도권</th><th>지방</th></tr>
<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
<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
</table>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공제액(단위:만원)</th></tr>
<tr><th>중소</th><th>중견</th></tr>
<tr><td>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td><td>1,300</td><td>900</td></tr>
<tr><td>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td><td>1,300</td><td>900</td></tr>
</table>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필요
-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정규직 전환: 2024. 12. 31.
육아휴직 복귀자:</td>
<td>□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액 인상 등

○ (현행과 같음)

○ 개정안별 상이

○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공제액(단위:만원)</th></tr>
<tr><th>중소</th><th>중견</th></tr>
<tr><td>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td><td>1,300</td><td>900</td></tr>
<tr><td>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td><td>1,300
1,500
(정준호의원안)</td><td>900
1,100
(정준호의원안)</td></tr>
</table>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필요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정규직 전환: (현행과 같음)
육아휴직 복귀자:</td></tr>
</table>

현 행	개정안
2025. 12. 31.	2026. 12. 31.(이용우의원안, 정부안) 2027. 12. 31.(서영교의원안) 2028. 12. 31.(최수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정부안) 2030. 12. 31.(윤준병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2026. 1. 1.(이용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정준호의원안)

* 최수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50),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이용우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81), 추경호의원안 2025. 8. 12. 발의(의안번호 12138), 정준호의원안 2025. 8. 28. 발의(의안번호 12471),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3025),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시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또는 900만원(중견기업)을 세액공제하는 추가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준호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공제세액을 200만원씩 인상하려는 것임.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공제제도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대상자에게 지급한 1년치 인건비에 대하여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의 공제율이 적

용되었고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공제율이 인상되었음.

이후 본 조세특례는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항목으로 재편성되면서 현행법과 같이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음.

또한, 개편 전까지는 복직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액을 추징했던 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과 함께 복직 후 근속기간이 2년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음.

□ 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킬 경우 1년간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공제액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2024년 들어 9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21	1.24	1.17	1.05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통계청

또한,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을 살펴보면 기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사용률 역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미상	15.7	15.8	13.4	14.3	13.1	16.5	14.2	17.6	13.8
4명 이하	10.8	10.4	10.7	10.1	11.3	11.8	11.8	17.1	18.8
5~49명	13.4	13.8	15.0	15.8	17.8	19.6	21.1	26.4	29.7
50~299명	13.9	14.8	17.0	18.6	20.9	22.8	24.8	29.9	32.3
300명 이상	25.0	26.2	28.0	29.6	30.5	31.7	32.9	36.2	37.4
계	19.1	20.0	21.6	22.5	24.0	25.5	27.0	31.2	32.9

주: 각 연도별 출생아 부모 중 해당연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을 육아휴직대상자로 나누어 100분율로 표시, 육아휴직대상자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말함.
자료: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출산의향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3.2%(남성 87.6%, 여성 89.1%)였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로 경력 및 승진·배치 등 불이익 염려 등이 제시되었음.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별 동의 비율]

(단위: %)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경력 및 승진, 배치 등 불이익이 염려되어	89.1	87.4	90.9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때문에	87.4	84.7	90.2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소득감소 때문	84.6	84.4	84.8
육아휴직 등으로 동료 등에게 폐를 끼칠까봐	80.9	79.2	82.6
경력유지, 커리어개발 등으로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79.1	72.2	86.4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66.0	62.9	69.2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휴직기간 이후 복귀를 허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14]의 경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연간

1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 도(소)매업, 금융업 등: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

360만원에서 최대 87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특례) 첫 3개월 200만원[1] 이후 30만원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360만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추가지원)[2]	10만원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일반	30만원	360만원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추가지원)[3]	10만원	120만원

주 1)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2)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3) 육아기단축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정부지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 연간 최대 1,840만원[15]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분담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이 지원됨.

둘째,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제도 도입이 중견기업의 육아휴직

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 5. (생 략)

15) (정부지원금) 연 1,440만원 +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기업지원) 200만원 + (지자체, 근로자 지원) 최대 200만원

복귀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기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 종료를 목표로 축소 연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16]

셋째, 기업이 고용 관련 조세지원을 항구화된 제도로 인식할 경우 조세특례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17]

문 의 처
02)6788-5154

16)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17)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